

광주지방법원 2021. 6. 23 선고 2021가단171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변 론 종 결 2021. 6. 2.

판 결 선 고 2021. 6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/7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6. 8. 1. 접수 제18010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피고 1, 2, 3, 4, 6, 7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피고 5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정혜원

별지